

#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의 민간설치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공조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서울시와 공단이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충전서비스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전기차의 보급·운행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서울시와 공단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단의 역할을 신의성실에 자세로 수행하고, 각각의 협력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력 내용)** 서울시와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공단은 “사업” 신청서류 접수·검토, 설치 전 현장실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 충전인프라 설치완료 확인, 국비 지원금 지급 및 향후 성과활용과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지역 지원 대상자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2. 서울시는 서울소재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공단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사업 목적에 맞게 충전기를 설치한 대상자에 대해 지방비를 지원한다.

3. 공단은 공용 충전기 1기당 구축 비용의 50%(최대 20백만원 이내)를 국비로 지원자에게 환급하고, 서울시는 지방비 확보 및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4. 서울시와 공단은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확인 등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성과, 사업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결과를 공유한다.
5. 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용 충전인프라에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을 함께 명기 할 수 있다.

제4조(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서울시와 공단 중 일방이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지속된다.

제5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본 협약의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후 1부씩 소지한다.

2017년 9월 11일

